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성—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양대승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1990년대 말부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이라는 주제가 지식 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구산업 스타일이 토착민(indigenous people)에게 속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유전자원과 넓은 의미에서의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구산업계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통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토착민들의 자원과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

토착민들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는 서구 산업계의 모습은 19세기 서구의 연구자, 예술가 또는 음악가들에 의해 19세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그 활용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²⁾ 즉 서구산업계가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과 단기간내에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하는 시장의 글로벌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

1_ Silke von Lewinski,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2nd Edition, Wolters Kluwer, 2008. p. 1.

2_ Simpson, Indigenous Heritage and Self-Determination (Copenhagen, 1997), 52 ; Lucas-Shloetter, Part III, Sec. 4.I.1.

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과 성공은 새로운 원료 및 재료, 즉 새로운 멜로디, 리듬, 디자인, 기술, 유전물질, 치료방법 등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면에서 민족전통품 *ethnic product*들은 인기가 있으며, 특히 독특한 전통문양은 현대의 유행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감각적인 패션으로서 신선한 매력을 준다. 또한 토착문화에 대한 잃어버린 가치와 새로워진 영성에 대한 서구문명의 탐색을 포함하고 있는 뉴에이지 *New Age* 운동은 토착지식 *indigenous knowledge*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서구산업계의 발전 이면에는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산업계가 토착 지식과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토착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며, 토착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긴 이익을 토착민들과 공유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산업계 행동의 저변에는 대부분 기존의 지식재산법에 따라 토착지식이 공유 *public domain*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다.⁴⁾ 하지만 토착민들은 이러한 산업계의 행동을 불공정하고 존중이 결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 산업계의 행동은 그들의 관습법을 외부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관습법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공유 개념과 토착민 유산 *heritage*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한다. 어쩌면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은 서구 문명 *civilisation*이라는 것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가치인 삶, 정체성 그리고 자기 확신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류문화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⁶⁾

이하 줄고 *拙稿*에서는 인류의 유산 *heritage*을 구성하는 대표적 유형들로서, 무형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및 민간전승물 각각의 개념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뜻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3_ Sandler, Music of the Village in the Global Market Place : Self-Expression, Inspiration, Appopriation or Exploita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agan, 2001, p. 81 et seq.

4_ Silke von Lewinski, Ibid. p. 2.

5_ Silke von Lewinski, Ibid.

6_ Silke von Lewinski, Ibid.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범위

오늘날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의 중요성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어져 왔다. 특히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⁷⁾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총회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였다.⁸⁾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 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규범이었다. 이에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은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⁹⁾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유형문화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에 대응하여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 유네스코 총회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한 것은 문화유산보호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었음을

7_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유네스코와 유산 (2010.9.28 방문).

8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인류문화유산 대표목록(제16조)과 긴급보전필요목록(제17조)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협약이 채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 여 만인 2006년 4월 20일,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11번째로 가입하였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ch/convention.asp> (2010.9.27 방문).

9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convention.asp> (2010.9.27 방문).

공인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3개의 단어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무형, 문화, 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각각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형無形’이란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의미하며 ‘무체無體’라고도 한다. ‘문화文化’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산遺産’이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무형문화유산에 좀 더 근접한 개념으로서 ‘문화유산文化遺産’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¹⁾

따라서 문화유산의 문어적文語的 개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한다고 하면, 무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 중 유형의 문화유산이 아닌 무형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것인바, ‘무형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문화양식, 무형문화재 또는 그 정신적 소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일 뿐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의 규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동 규정에 따

10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유네스코와 유산 (2010.9.28 방문).

11_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0.9.28 방문).

르면, '무형문화유산(ICH)'이란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관행·표상·표현·지식·기량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건·가공물 및 문화 공간이다.¹²⁾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반드시 무형물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물과 관련되어 있는 유형물도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포함시켜 넓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규정은 무형물로서의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기술)이외에도 무형물과 관련이 있거나 그 결과물로 생성된 도구·물건·가공물 등의 유형물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관련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2항의 규정은 ①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공연 예술, ③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행, ⑤전통 공예기술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¹³⁾ 다만 동 규정은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규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 규정에서 '그 중에서도(영어식 표현 *inter alia*)' 또는 '특히(불어식 표현 *notamment*)'와 같은 부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정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정의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동조 1항의 규정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전통공예기술'의 경우 무형의 전통적 공예 기술 또는 기능으로 한정하고 전통공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공예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시적 규정이지 제한·열거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반드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형식이 이러한 예시

12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1호, 원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 with—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13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2호, 원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a)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performing arts; (c)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traditional craftsmanship.

적 범위에 자주 나타나는 것 뿐이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나 정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인간과 주변 환경 즉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고, 문화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하며,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¹⁴⁾ 잘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신적·기술적 소산물인 유형물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한 개념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하여 서로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바, 특히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전통문화표현물, 문화재 등이 대표적이다.¹⁵⁾

1.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지식은 지식이 전통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지식 *knowledge* 은 전통적 *traditional*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상기 *recall*를 통하여 인간의 접근가능한 기억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일의 생활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학습된 기술의 실행과 관계된다.¹⁶⁾ 그리고 ‘전통적 *traditional*’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지식이 하나의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계승되어지고, 특정 장소나 풍경 또는 생태계에서 오랜 경험의 과정을 통해 단체들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것을 함축하고 있다.¹⁷⁾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전통지식은 단체성을 가지며 공동체 전체의 공유로 간주되어진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공동체내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

14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제1항 후단.

15_ Guan Yuying,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보호), 2004년 한·중 국제공동 연구보고서, 49쪽, 전통지식과 전통문화 및 folklore에 관한 논의는 무형문화유산의 논의 보다 조금 더 앞선 1967년 스톡홀름의 지식재산회의에서 인도대표들이 내놓은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_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mplementation of Article 8(j) Doc., UNEP/CBD/COP/3/19 8-9.

17_ Jonathan Curci, Ibid.

며, 특정한 문화적·전통적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¹⁸⁾

따라서 지식을 전통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의 여부보다는 그러한 지식이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지고 보존되어 온 방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점에서 전통지식은 단순히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전통지식 안에 내재하는 규범적·사회적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다. 즉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은 종합적인 경험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서구의 과학적 발견, 경제적 선호 및 철학이 널리 퍼져있는 문화와 결합된 것으로서의 범세계적인 지식 *cosmopolitan knowledge*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²⁰⁾

전통지식 *TK*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협의의 전통지식으로서, 전통적 *traditional*·생태학적 *ecological*·의학적 *medical* 지식으로서의 기술적 노하우와 관계되는 전통지식을 말하고,²¹⁾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광의의 전통지식으로서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결과물 전체를 말한다.²²⁾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국제적 합의는 없으며 WIPO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최근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개정된 규정 *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WIPO/GRTKF/IC/16/5)*' 제3부 실질규정 제3조(주제의 일반적 범위)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동 규정 제3조 2호는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인 맥락에서 지적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통지식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 간 계승되어진 성문화된 지식체계에 내포되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기술 분야로 제한되지 않으며, 농업적, 환경적, 의학적 지식, 그리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어떤 전통)지식

18_ Jonathan Curci, Ibid.

19_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 Taking Forward the Review of Article 27.3(b) of the TRIPs Agreement, Joint Communication from the African Group, WTO Doc. IP/C/W/404 (26 June 2003), e.g. Art 2(b)(iii).

20_ A. Hansen and J. Vanfleet,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shr.aaas.org/tek/handbook/handbook_1.pdf 13.

21_ WIPO 2003.5.2 발행 자료,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p. 6.

22_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9년, 391쪽.

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³⁾ 전통지식은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량 *innovation*이 추가되는데, 예컨대 기존의 전통지식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것이 개량에 해당한다. 개량은 전통지식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본질은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²⁴⁾

2. 전통문화표현물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Expressions of Folklore: EoF*

전통문화표현물²⁵⁾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과 'Expressions of Folklore'라는 용어가 유사개념으로서 혼용 또는 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의 표현방식에 대하여 몇몇 국가들은 민간전승물 *folklore* 용어의 부정적인 느낌을 이유로 EoF 대신 TCEs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²⁶⁾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민간전승물 *folklore*이 문화 *culture*의 하위수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²⁷⁾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TCEs 보다 EoF 사용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²⁸⁾

본래 'folklore' 용어는 일반사람들 또는 부족이나 씨족을 가리키는 말인 'folk'와 전통지식 또는 전통을 뜻하는 'lore'가 병합된 것이다.²⁹⁾ 'folklore'라고 하는 용어는 1846년 「Notes and Queriess」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인 W.G. Thoms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전통, 관

23_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6/wipo_grtkf_ic_16_5.pdf (2010.10.1 방문).

24_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logical Diversity, U.N. Doc. UNEP/CBD/TKBD/1/2(Oct. 18, 1997), para. 86. 김병일, 김경준, 채지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년, 5쪽.

25_ 엄밀히 말하여 영어원어를 번역하면 전통문화표현물(TCEs)과 민간전승표현물(EoF)로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개념과의 비교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6_ WIPO 자료(booklet n°1),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folklore, p. 2.

27_ Weinwe, 'Protection of Folklore: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Contra Menon, 'A definition of folklore', [1979] INTERGU-Jahrbuch, Vol 4, 209 : 'I do not think it refers to anything of the lower strata of societies as such'. Silke von Lewinski, Ibid, p. 345.

28_ WIPO IGC 5차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EoF 용어사용을 선호하였다. See the Repo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GC, July 2003, Doc. WIPO/GRTKF/IC/5/15, No 34, p.13; Silke von Lewinski, Ibid. : 알제리를 제외할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들 즉, 말라위,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ARIPO 대표단은 TCEs 보다 folklore 또는 EoF 용어를 사용하지는 입장임.

29_ www.unesco.org/culture/ich/doc/src/00272-FR.doc (2010.9.29 방문).

습 및 미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³⁰⁾ 그 후 'folklore'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람들의 문화(*culture of people*)'와 '사람들의 지식(*knowledge of people*)'이라는 표현 하에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이해되어졌다.³¹⁾

하지만 folklore의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WIPO내에 정부간위원회(IGC)가 만들어지고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문화표현물의 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등 기본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및 토착 집단간에 민간전승물의 접근방법이 다르다. 즉 민간전승물(folklore)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자는 folklore를 전통(Tradition)으로 보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는 folklore를 계속되고 끊임없는 문화적 표현(continuing and constant cultural manifestation)으로 보아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어 여전히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³²⁾ 서구의 해석은 세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오고 보존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예술적 표현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민간전승물(folklore)의 개념은 흔히 축적·사장되어진 것들(the collected and dead)을 포함한다고 한다.³³⁾ 반면에 개도국 및 토착집단은 민간전승물들을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들의 생활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의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고 본다.

다만 1982년 WIPO와 UNESCO에 의해 발표된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로부터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s of folklore)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위한 모델 규정'³⁴⁾이 '민간전승표현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82년 모델규정에 따르면 '민간전승표현물'이란 한 국가 내의 공동체(community) 또는 그 공동체의 전통적·예술적 기대에 영향을 받은 개인에 의해서 유지·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traditional artistic heritage)의 특

30_ Moreira da Silva, 'Folklore and Copyright', [1967] EBU Review, Vol. 101, 54 ; Silke von Lewinski, Ibid.

31_ Niedzielska,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Folklore Protection', [1980] copyright, 339 ; Silke von Lewinski, Ibid.

32_ Palethore & Verhulst, Repor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00, no. 1.1, p.6.

33_ Weiner, Protection of folklore :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34_ UNESCO-WIPO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이후 WIPO 주도로 1984년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행위들로부터 Expressions of folklore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 초안(Draft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델법안과 조약초안의 조항들은 개별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productions}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⁵⁾

1982년 모델규정 이후에도 모델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10가지 이슈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개정안^{Revised Draft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마련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 현재 2010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16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6월 7일에 WIPO 정부간회의에서(WIPO/GRTKF/IC/17/4 PROV) 마련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 보호를 위한 개정초안규정'의 세 번째 부분인 실질적 규정^{Substantive provisions} 제1조(보호사항)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또는 민간전승표현물^{EoF}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표현물들의 보호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1조 제1호는 전통문화표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³⁶⁾

'전통문화표현물^{TCEs} 그리고/또는 민간전승물표현물^{EoF}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이들의 조합이든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 안에 전통문화와 지식이 표현되거나, 나타나거나, 보여지거나, 포함되거나 세대간 계승된 것으로서 제한적이지 않은 아래 형태의 표현물 또는 그것들의 조합을 말한다.³⁷⁾

35_ 모델 규정 제2조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Published by UNESCO and WIPO, 1985, Section 2, Protected Expressions of Folklore.

36_ 개정안 제1조 제1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or "expressions of folklore" [are] and any forms, [whether] tangible [and] [and/or] intangible or a combination thereof,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comprise:] and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cluding: /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 a) phonetic or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etc.
- b) musical or sound expressions, such as songs, rhythms, [and] instrumental music and popular tales,
- c)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sports and traditional games and other performances, theater, including, among others, puppet performance and folk drama,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and,
- d)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wooden carvings, sculptures, mouldings,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ry, baskets, food and drink,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works of mas, toys, gifts and; handicrafts: musical instruments; stonework, metalwork, spinning, and architectural and/or funeral forms.

37_ 개정안 제1조 제1호에서 말하는 것들은 멕시코 대표단을 비롯하여 각국의 견해를 수렴하여 작성된 수정 초안 규정으로서 아직 논의 중이다.

- a) 이야기, 서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그리고 그 밖의 설화와 같은 발성(發聲)적 또는 구두(口頭)적 표현물; 단어, 표지, 이름 과 기호 등,
- b) 노래, 리듬, 기악, 그리고 popular tales과 같은 음악적 또는 사운드 표현물,
- c) 춤, 놀이, 기념식, 종교적 의식, 스포츠와 전통놀이, 그리고 그 밖의 퍼포먼스, 연극, 그 중에서도 인형극과 folk드라마와 같은 동작에 의한 표현물, 구체적인 형태로 축소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리고
- d) 예술제품 특히 소묘, 디자인, 회화(바디페인팅을 포함한), 목각, 조소, 몰딩, 도기, 테라코타, 모자이크, 목제품, 금속제품, 보석품, 바구니, 식음료품, 바느질품, 직물, 유리제품, 카펫, 의상, 카니발작품, 장난감, 선물과 같은 유형적 표현물 그리고, 수공예품, 약기, 돌세공품, 금속가공물, 방적품, 그리고 건축 또는/과 장례 형태

위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전통문화표현물 *TCEs* 또는/과 민간전승표현물 *EoF*은 그 자체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유·무형의 요소들로 구성되든 상관없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구두적 표현물, 음악적 표현물, 동작표현물, 예술제품과 같은 유형적표현물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고정물 *non-fixed*로서의 구전口傳표현물도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화 *fixation*가 반드시 보호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형태'의 보호는 성역, 묘지, 기념비와 같은 신성한 장소의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³⁸⁾

3.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과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서 '무형문화재'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무형의 문화유산의 정의와 비교하여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는 제한적인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38_ WIPO 자료,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7/wipo_grtkf_ic_17_4_prov.pdf (2010.10.1방문)

Ⅲ. 무형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 비교

구분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
일반적 정의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제2조 1호)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 지적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통지식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간 계승되어진 성문화된 지식체계안에 내포되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 (제16차 WIPO 정부간위원회 개정된 초안규정 제3조2호)	'전통문화표현물(TCEs) 그리고/또는 민간전승물표현물(EoF)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이들의 조합이든시간에 어떤 형태든지 그 안에 전통문화와 지식이 표현되거나, 나타나거나, 보여지거나, 포함되거나 세대간 계승된 것으로서 제한적이지 않은 아래형태의 표현물 또는 그것들의 조합을 말한다. (제17차 WIPO 정부간위원회 개정된 초안규정 제1조제1호)
특징	무형+유형(공예품 등 일부) 무형물뿐만 아니라 도구·물품·공예품 등의 유형물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 ※ 개념에 문화공간 포함	광의의 전통지식과 협의의 전통지식으로 구분 광의의 전통지식 :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결과물 전체	무형+유형(예술, 건축 등 일부) 보호의 요건으로서 고정화(fixation)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음 ※ 건축형태의 보호는 성역, 묘지, 기념비와 같은 신성한 장소의 보호를 포함

구분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
범위	①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 예술 ③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 기술 ※ 예시적 규정임	어떤 특정기술 분야로 제한되지 않으며, ① 농업적 전통지식 ② 환경적 전통지식 ③ 의학적 전통지식, 그리고 ④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	① 구두적 표현물 : 이야기, 서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그리고 그 밖의 설화와 같은 발성(發聲)적 또는 구두(口頭)적 표현물: 단어, 표지, 이름 과 기호 등 ② 음악적 표현물 : 노래, 리듬, 기악, 그리고 민담과 같은 음악적 또는 사운드 표현물 ③ 동작표현물: 춤, 놀이, 기념식, 종교적 의식, 스포츠와 전통놀이, 그리고 그 밖의 퍼포먼스, 연극, 그 중에서도 인형극과 folk드라마와 같은 동작에 의한 표현물 + 장례형태 ④ 예술제품과 같은 유형적표현물 : 예술제품 특히 소묘, 디자인, 회화(바디페인팅을 포함한), 목각, 조소, 몰딩, 도기, 테라코타, 모자이크, 목제품, 금속제품, 보석품, 바구니, 식음료품, 바느질품, 직물, 유리제품, 카펫, 의상, 카니발작품, 장난감, 선물과 같은 유형적 표현물 그리고, 수공예품, 악기, 돌세공품, 금속가공품, 방적품, 건축 형태